

의안번호	제 43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 
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8월 1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435

제출연월일 : 2016년 8월 19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 사항 반영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

## 2. 주요내용

-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(안 제2조제2항)
  - (현행) 충청북도재무관
  - (개정)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
- 위원장이었던 충청북도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(안 제2조제2항)
-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(안 제2조제2항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

###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충청북도재무관으로 하고”를 “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”로, “해당하는 자”를 “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위촉한 자”를 “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있는 자”를 “있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격이 있는 자로서”를, “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”로 하고, “풍부한 자”를 “풍부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공무원으로서”를 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”로, “있는 자”를 “있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7. 충청북도재무관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위원장을 제외한 위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제3항 본문 중 “충청북도재무관”을 “위원회 위원장”으로, “계약심의위원회 위원”을 “위원회 위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“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”을 “충청북도재무관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</u> 구성·운영 및 <u>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</u> 범위 등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충청북도재무관으로 하고</u>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는 자</u>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<u>위촉한 자</u>로 한다.</p> <p>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<u>관련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</u>로 재직중에 <u>있는 자</u></p> <p>2. 변호사의 <u>자격이 있는 자</u>로서 <u>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</u>한 자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5. <u>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</u></p> <p>6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</p>	<p><u>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</u> 구성·운영 및 <u>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</u> 범위 등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민간위원 중에서 호</u> <u>선하고</u> ----- ----- <u>해당하는 사람</u> ----- ----- ----- <u>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</u> <u>로</u>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있는 사람</u></p> <p>2. ----- <u>자격이 있는 사람으</u> <u>로서</u> ----- ----- <u>풍부한 사람</u>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6. -----</p>

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

<신 설>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·② (생략)

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 재무관이 되며,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장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

-----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-----  
----- 있는 사람 -----

7. 충청북도재무관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촉위원-----  
-----  
----- . <단서 삭제>

제6조(소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위원회 위원장-----  
-----  
위원회 위원 -----  
-----  
----- .

제11조(수당 등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,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---- . ----- 충청북도재무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**제32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
나.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

다.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

2.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
3.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(제1항 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,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,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106조(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)**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·도에 설치하는 시·도계약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“라 한다)와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시·군·구계약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위원회“라 한다)로 구분한다.

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



- 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인 사람
- 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
- 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
- 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
- 5. 삭제
- 6.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
- 7.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
- ③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·군·구에 제공할 수 있다.
-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106조의2(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(제4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107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)**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·용역·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- ④ 계약심의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⑤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(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건“을 “안건“으로, “부정당업자“를 “심의 관련자“로 본다. ⑥ 삭제 <2016.1.15.>

**제108조(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)**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“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. 다만, 긴급한 재해복구사업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.

1. 시·도위원회: 해당 시·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(물품·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)
2. 시·군·구위원회: 해당 시·군·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(물품·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109조(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)**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